

2026년 제2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6. 4. 28.(화) 11:00		장 소	군산시청 4층 면담실	
참석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명	비 고
	위원장	군산시	부시장	김영민	당연직
	위 원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황관선	
	위 원	건축사사무소이레	건축사	김성렬	위촉직
	위 원	소비자교육중앙회 군산지회	지회장	최순금	
	위 원	한국유통경영학회	연구원	김장현	
회의 안건	1. (심의) 군산시 경암동 서래장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2. (심의) 군산시 군산 원도심 골목형상점가 지정				
	3. (심의) 군산시 군산대 대학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4. (심의) 군산시 대명 오손도손 골목형상점가 지정				
	5. (심의) 군산시 산북,소룡 골목형상점가 지정				
	6. (심의) 군산시 수송제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7. (심의) 군산시 시그니처 골목형상점가 지정				
	8. (심의) 군산시 신장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9. (심의) 군산시 군산원협 싱싱마루 골목형상점가 지정				
	10. (심의) 군산시 군산금빛 골목형상점가 지정				

1. 위원장 인사말 및 개의	
(위원장)	○ 인사 말씀 및 성원 확인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2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개회 ○ 사업 전반 설명 및 심의사항에 대한 상권활성화계장 보고 후 안건 심의
2. 사업 전반 설명	
(상권활성화계장)	○ 골목형상점가 개요, 지정 시 혜택 및 추진 절차 설명
3. [안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 10건	
(위원장)	○ 신규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지정 심의 안건 설명 ○ 골목형상점가 지정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논의 제안
(김성렬 위원)	○ 구역 내 불법 건축물은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도심과 경암동 일대에는 불법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점포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는지?
(상권활성화계장)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에서 제외함
(황관선 위원)	○ 실제로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모두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대장상 불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부시장)	○ 지정 기준(2,000㎡ 이내 15개 이상 점포)에 미달하여, 점포가 10~11개만 있는 구시가지 지역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상권이 무너진 곳을 살리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역으로 집중 지원하여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함
(상권활성화계장)	○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소외 상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매출액, 점포 규모, 영업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음. 당장 지정이 어려운 개별 상권에는 시 자체 사업(카드수수료, 임대료 지원, 노란우산 공제사업 등)을 적극 연계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김성렬 위원)	○ 구역 내 빈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골목형상점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권활성화계장)	○ 이미 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의 공실에 들어온 경우 바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함. 단,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을 추후 구역에 포함하려면 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함

(부시장)	○ 도내 타 지자체 지정 현황을 보면 전주를 제외하고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가 적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권활성화 계장)	○ 익산 등 타 시군 문의한 결과,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지자체와 상인들의 의지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황관선 위원)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뿐만 아니라 정부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혜택이 크므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함
(부시장)	○ 안동집 주변이나 근대화거리 등 외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우려됨. 이 일대를 골목상권으로 묶어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상권활성화 계장)	○ '안동집' 주변은 상가 간 거리가 있어 밀집도 요건 충족이 어려움. 다만, 관광객이 많은 월명동 일대 및 말랭이마을 등은 중기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별도 신청하여 상점가 지정 없이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자생력이 있는 조촌동 롯데몰 등은 자체 접수가 원활하나, 침체된 구도심(중앙동, 영동 상가, 평화시장 양키시장길 등)은 재단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제도를 홍보하고 구역 확대 독려를 하고 있음
(김장현 위원)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이에 대한 별도의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권활성화 계장)	○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정 구역 인근에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음
(김장현 위원)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일본의 상점가 사례처럼 지역 명칭을 명시한 안내판을 부착해 주면 상인들의 소속감도 높아지고 상권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상권활성화 계장)	○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상권활성화 계장)	○ 추가 안내 사항으로, 기존에 완화되었던 보건·법무·회계·수익업 관련 업종은 다시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30억 원 미만'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 ○ 3월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7%로 축소되었으나, 5월 1일부터 5일까지(동행축제 기간)는 한시적으로 10% 할인율(30만 원 한도)을 적용하여 구매 가능함
(최순금 위원)	○ 최근 학부모들이 학원비 결제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 가맹점이 확대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임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4.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위원장 마무리 말씀 ○ 2026년 제2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를 마칩